대한민국 반부패백서



발 간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한국의 부패방지정책 총괄기관이자 대표 옴부즈만입니다. 2008년 출범 이래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 들고 위법·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합니다. 동 회의는 격년마다 개최하는 반부패분야 최대의 국제포럼으로, 국제 및 국가 단위의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와 캠페인 경험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동 회의 개최와 더불어, 그 동안 여러 나라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차원의 반부패 노력을 전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동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한국방역 모델을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방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정부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한국국민이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지켰기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패문제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겪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

니다. 방역모델에서 나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은 부패문제를 해결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며, 그간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반부패백서」에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들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각종 정책개발 및 연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제 %)

Contents

발간시	·}	2
	총론 : 한국 반부패정책의 연혁과 성과	
	01 부패방지법 제정 및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 ·····	10
	02 현 정부의 출범배경 및 반부패정책 방향	
	03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15
	공공부문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01 부패방지정책 총괄 및 조정 ·····	20
	0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진단·평가 ······	
	03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04 공공부문 정보공개제도	
	05 정책실명제	
	06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	
	07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	
	08 공공감사제도 운영	
	한국의 ICT와 부패방지	
	01 정보공개포털	50
	02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0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05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창구) ·····	
	06 국민신문고(epeople.go.kr)·····	68
IV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행위기준 강화	
	01 공직자 선발과정의 투명성 제고 ·····	72
	02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	
	03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운영 ···································	
	04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운영······	
	05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	
	0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07 전관특혜 근절	
		/ '

V	부패의 감시 및 적발	
	01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	96
	02 부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98
	03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100
	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관련 법률 제정	102
VI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01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06
	0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110
	03 각급기관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지원 ······	114
VII	민간부문(기업)의 부패방지 노력	
	01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 지원 · · · · · · · · · · · · · · · · · ·	118
	02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 개발 및 측정 지원	122
	03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04 탈세근절 및 역외탈세 차단 노력 ·····	
	05 금융거래 등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노력	
VIII	시민사회 협력 및 대국민 인식제고	
	0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140
	02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03 시민참여	
	04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및 교육체계 ·····	
		154
	06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158
(X)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01 반부패국제협약의 적극 이행	162
	02 국제기구 및 회의체를 통한 반부패라운드 참여 ·····	
	03 양자협력을 통한 반부패 기술지원 선도	
	〈부록〉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 목록	174











총론 : 한국 반부패정책의 연혁과 성과

반부패 정책ㆍ제도 연혁

연도	한국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1983	• 공직자윤리법 시행	
1998	OECD뇌물방지협약 비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정책실명제 도입	
200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 부패방지법 제정
200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축 · 운영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도입 ·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도입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 도입
2003		•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2004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운영(~07년)	
2005		•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2006		• 부패영향평가 도입 • 부패취약기관 청렴컨설팅 도입
2008	UN반부패협약 비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ㆍ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통합)
20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9 • 대한민국 반부패백서

연도	한국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2011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 시행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 시행
2012		• 반부패 전담교육기관 '청렴연수원' 설립 •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UN공공행정상 수상
2015	•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서비스(열린재정) 도입 · 운영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2017	•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2018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운영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Part I

01

부패방지법 제정 및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립 이전(1948년~1990년대 초반)

한국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7~8%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도 경제성장을 거두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불법과 비리가 발생해도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성장의 그늘에 일부 편법과 비리 관행이 잔존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패나 비리에 대해 적발·처벌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집중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등 부작용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았다.

반부패시스템 제도적 기반 구축(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사회의 반부패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1997년 경제위기로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의 제정 및 독립된 반부패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01년에 부패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부패방지법(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한국 최초의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 부패방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반부패활동의 전개(2002년~2007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부패방지와 국가청렴수준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적인 반부패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범정부적 부패방지정책수립, 부패유발 법령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등 사전예방 대책과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 사후통제 대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권익과 연계된 부패방지기능의 확대(2008년~현재)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각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는 위법하거나 잘못된 행정 관행과 부패나 비리를 감시하는 옴부즈만·행정심판·부패방지, 세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국민권익위'라 한다)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산되었던 권익구제 창구가 일원화되어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 졌고, 특히 공직자가 위법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이 야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 기능의 통합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부패방지에 있어 시너 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그간 국민권익위에서는 민원과 부패가 다수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기능을 연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기존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반부패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Part I

02

현 정부의 출범배경 및 반부패정책 방향

문재인정부의 출범 배경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대한민국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뜨거웠다. 당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부정부패에 맞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 시위는 여러 차례의 담화문 발표에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도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촛불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다.

2017년 5월 10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정부 출범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부패, 비리 청산'으로 꼽았고, 문재인정부는 그 뜻에 따라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농단 재발방지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20대 국정 전략 및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정과제 1번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번 과제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으로 정하여 반부패·청렴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광화문 촛불 집회(2016.11.)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공

반부패 정책 방향

문재인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았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하여 부패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며,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반부패·청렴정책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기반으로서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반부패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경제계·직능계·시민사회·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 축으로 반부패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각 부처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은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 등 각 부처에서 주요 반부패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2017, 9, 26,)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2018.3.8.)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 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13번째 국정과제로 삼았다. 특히 그간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에 관한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Part I

03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및 추이

세계적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업인 설문조사와 애널리스트 등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산출되며, 현재까지 국가간 청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0년 1월 23일 발표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고,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점수는 5점, 순위는 12단계가 상승하였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청렴사회 실현에 대한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범정부 반부패 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금번 국가청렴도 39위는 국민의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성적이며, 문재인정부 정책 목표인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이 필요할것이다.



부패인식지수(CPI) 추이(2008년~2019년)

공공청렴지수(IPI) 개요 및 추이

독일 베를린 소재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격년으로 국가별 공공청렴성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청렴성지수(IPI)는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①사법부 독립성, ②행정적 부담, ③교역 개방성, ④예산 투명성, ⑤전자적 시민권, ⑥언론의자유 등 총 6개의 하위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이를 종합하여 점수와 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8.33점(10점 가장 청렴)으로 117개국 중에서 20위로 2017년에 비해 4단계가 상승하였다.

* (2015년) 23위(8.04)/109개국 🖒 (2017년) 24위(8.02)/109개국 🖒 (2019년) 20위(8.33)/117개국

지표 중 가장 우수한 항목은 전자적 시민권(10점)이고, 그 다음으로 행정적 부담(9.3340점)순으로 나타났다.

연도	총계 사법부		행정적		교역		예산		전자적		언론자유			
신도	점수	순위	독립성		부담		개방성		투명성		시민권		신근시규	
2019년	8.33	20위	5.62	/49	9.40	/19	9.38	/40	8.50	/26	10.00	/1	7.15	/36
2017년	8.02	24위	5.44	/53	9.61	/10	8.97	/36	8.50	/26	8.28	/16	7.30	/34
2015년	8.04	23위	5.40	/51	9.44	/13	8.97	/38	8.93	/15	8.19	/17	7.31	/34

세부 평가결과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개요 및 추이

국제 뇌물반대 기업협회인 미국 TRACE International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대규모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협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는 총 200개국을 대상으로 ①기회(정부와 비즈니스 상호작용), ②억제력(불관용 및 법집행), ③투명성(정부공공서비스 투명성), ④감시(언론, 시민사회의 감독 역량) 등 총 4개 부문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 한국은 24점으로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세부 영역 중 가장 우수한 항목은 투명성 영역(20점)이고, 그 다음으로 감시(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결과

	총계 ① 기회					(② 억제력			③ 투명성			④ 감시		
연도	점수	순위	평균	접촉	기대	수단	평균	불관용	법집행	평균	절차	이해	평균	언론	시민
2019년	24	23	25	16	37	22	27	26	35	20	23	20	24	20	28
2018년	24	25	25	-	-	-	25	_	-	22	-	-	26	_	_
2017년	29	33	30	-	-	-	35	_	_	25	-	-	30	_	_











공공부문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Part II

01

부패방지정책 총괄 및 조정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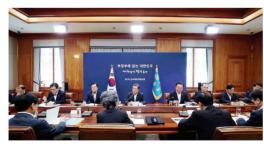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정의로운 결과 등 공정과 반부패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 중 하나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던 반부패관계 기관협의회를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복원·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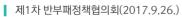
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부패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과 관계된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적 사항을 논의하는 구심점으로서 의미가 크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 6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제5차 회의에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정성 제고 대책 논의를 위하여 명칭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변경하였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더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반부패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분야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구분	주요 안건
제1차 (2017.9.26.)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반부패정책 추진전략, 중대부패범죄 처벌강화, 민생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방위사업 비리 척결방안 등
제2차 (2018.4.18.)	《국민과 함께 청렴한 대한민국》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안전 분야 부패방지방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 기술유출 방지 및 해외범죄수익 환수, 역외탈세 차단 등
제3차 (2018.11.20.)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 학사비리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지역 토착비리 개선,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제4차 (2019.6.20.)	〈특권 없는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 호화생활자의 신종ㆍ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대응방안,학교법인 회계 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방안
제5차 (2019.11.8.)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 •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제6차 (2020.6.22.)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정의로운 대한민국〉 • 반부패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방향, 위기극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등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2020.6.22.)

* 사진 출처 : 청와대 제공(president.go.kr)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부패는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기관·조직별 법·제도와 관행, 내·외부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형태의 반부패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우리사회의 중장기 반부패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국민 참여를 통하여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이는 2018년 4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되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내용

4대 전략	50개 추진과제 중 주요 내용
함께하는 청렴	-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	- 공공재정 누수방지 제도정비 -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행위기준 정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 확립 - 공공분야 갑질 근절 -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등
투명한 경영환경	-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 재건축ㆍ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 보건ㆍ의료분야 부패개선 등
실천하는 청렴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 강화 -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분야 부패방지 -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 공직자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2019년 추진과제 중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성과로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을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을 통한 고위층·권력형 비리 대응체계 마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퇴직자 행위제한 강화, 안전 분야 취업제한 확대 등이 있다.

향후에도 국민권익위는 50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범정부 반부패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전달

국민권익위는 매년 초 각급기관의 감사관 및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수립·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반부패·청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문제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렴컨설팅은 2006년부터 추진되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까지는 기관별로 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2018년에는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청렴도가 높은 멘토기관과 청렴도가 낮은 멘티기관으로 컨설팅그룹을 구성하여 그룹 단위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기관 간 청렴도 향상 노하우 공유와 우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국민권익위와 멘토기관은 멘티기관의 청렴도 저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멘티기관의 업무, 제도, 반부패 추진체계, 내부통제 시스템, 구성원의 행태 등을 분석하는 반부패 역량 진단을 실시

하였다. 반부패 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부패 취약분야와 청렴도 저조 원인이 도출되면 그에 따른 기관별 맞춤형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멘티기관에서는 그룹별 청렴컨설팅 회의를 통해 전수받은 멘토기관의 우수 반부패 시책을 기관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Part II

0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진단 ·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 도입 취지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제도·시스템을 갖춰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방향이 주로 적발과 처벌 등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와 공공기관이 적절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를 2002년에 도입하여 매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개요 및 연혁

공공기관 청렴도는 1999년에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3번의 시험측정을 거친 후 2002년 도입되어 2020년에 19번째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71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측정 대상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매년 700여개 공공기관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 대상기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 공공기관 중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측정의 필요성이 큰 공공기관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수성이 있는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맞춤형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그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UN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분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반부패 양자협력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몽골 등 일부 국가에서 동 제도를 전수받아 해당 국가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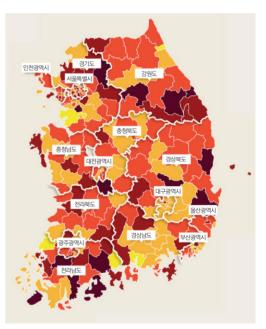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직자 등 내부직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공기관별 실제 발생한 부패 사건을 점수화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로 산정한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만으로 산정됐으나, 이후 설문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객관적 감점지표를 반영하여 2012년부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며, 매년 25만 여명 이상이 응답하고 있다. 부패사건은 기관별 부패사건 징계 현황,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점수화하여 감점으로 반영한다.

측정결과는 공공기관별 등급(1~5등급)과 점수(10점 만점)를 산정하며, 1등급일수록,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매년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통해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과 측정영역별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청렴도 결과를 청렴지도로 제작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 개요 및 연혁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기관별 청렴도 등급 공개(예시)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2002년에 평가모델과 평가과제를 개발하여 74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이래로 대상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매년 250개 이상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공기관 중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일정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등이다.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렴도가 상위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 기관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매년 국민권익위가 청렴정책의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체계(지표)를 설계하고, 각급 공공기관이 1년간 추진한 반부패 정책 실적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면 이 실적을 내부·외부 전문가단이평가하여 기관별 점수와 등급(1~5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2020년에는 청렴정책의 진행 절차에따라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의 16개 지표와함께 4개 감점지표를 포함하여총 20개 지표로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각 기관별 평가결과는 매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체계(감점지표 제외)

계회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개)

실행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청렴행정 · 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운영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반부패 ·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8개)

성과 · 확산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 · 공개 노력 등(7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 성과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이후부터는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청렴도 측정 제도가 개편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는 종합청렴도 점수가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에 3년 연속 향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하락하였다. 청렴도 측정 도입 초기인 2002년에 4.1%에 달하던 부패경험률은 2016년에 1.8%, 2019년에는 0.5%에 불과하여 공공부문에 청렴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9년)

(단위:점)



공공부문 청렴수준의 향상에는 각급 공공기관들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2019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기관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도 0.12점 상승하여 전체 기관의 청렴도 점수 상승분을 0.05점이나 상회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한 기관들의 노력이 청렴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에 대해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에게는 청렴컨설팅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 청렴 정책과 기관의 사례를 홍보·확산하여 공공부문과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자율적인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측정·평가 대상범위 및 지표·모형 등을 실효성 있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예정이다. 부패취약분야 등 청렴도 측정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고, 지난 19년간의 노하우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부패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모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지표도 개편하여 청렴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수준 진단 범위를 확 대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전반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Part II

03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법령 소관기관에 권고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크게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재의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현행 법령 평가, 각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자치법규 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로 나눌 수 있다. 2005년 12월 29일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후 200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부터 도입·시행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의 평가기준 설명

부패영향평가는 크게 4가지 기준, 12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부패영향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부패영향 평가기준

쥬 스

- 준수부담의 합리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통제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집 행

-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재정누수 가능성

- 이해충돌 가능성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 공개성
- 예측 가능성

2020년 9월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며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인식하에 부패영향 평가기준 중 부패통제 영역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합리성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능성	있는지 여부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성 · 객관성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 · 대행의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투명성 · 책임성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가능성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가능성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체계성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가능성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2006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0,542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2,413개의 법령에 내재하는 5,88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현황(2006년 4월~2019년 12월)

총 평가 법령	원안 동의	개선 권고		
20,542개 법령 (100%)	18,129개 법령 (88.3%)	2,413개 법령 (11.7%), 개선권고 5,880건		

평가한 법령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9,116개(44.4%)로 가장 많았고, 총리령/부령 (7,478개, 36.4%), 법률(3,815개, 18.6%) 순으로 많았으며, 개선 권고한 법령의 종류는 대통령령 (1.130개, 46.8%), 법률(645개, 26.7%), 총리령/부령(608개, 25.2%) 순이었다.

버려	조르변	펴가혀화	(2006년	//원~201	19년 12월)	
H 20	\overline{c}	3/12/3	ことしししてい	4 = 20	IフT! IL 当り	

종류 법령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합계	20,542 (100%)	3,815 (18.6%)	9,116 (44.4%)	7,478 (36.4%)	133 (0.6%)	
개선권고 법령	2,413 (100%)	645 (26.7%)	1,130 (46.8%)	608 (25.2%)	30 (1.2%)	
원안동의 법령	18,129 (100%)	3,170 (17.5%)	7,986 (44.1%)	6,870 (37.9%)	103 (0.6%)	

개선 권고한 법령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748개 법령, 1,890건의 개선권고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513개 법령, 개선권고 1,200건) 분야, 일반행정(340개 법령, 개선권고 780건)분야 순으로 개선의견이 많았다.

법령 분야별 개선의견(2006년 4월~2019년 12월)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개선권고 법령	2,413	340	309	127	174	748	135	513	60	7
	(100%)	(14.1%)	(12.8%)	(5.3%)	(7.2%)	(31.0%)	(5.6%)	(21.3%)	(2.5%)	(0.3%)
개선권고 건수	5,880	780	762	268	466	1,890	380	1,200	122	12
	(100%)	(13.3%)	(13.0%)	(4.6%)	(7.9%)	(32.1%)	(6.5%)	(20.4%)	(2.1%)	(0.2%)

법령상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일부 국가에서 동 제도를 전수받아 해당 국가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부터는 베트남에서 부패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월드뱅크 및 럿거스 부패방지연구소(Rutgers Institute on Anti-Corruption Studies) 등에 소개된 바 있다.





월드뱅크 방문(2018)

▋ 럿거스 부패방지연구소 방문(2018)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2019년 4월 16일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019년 10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2월 24일에는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3년간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에는 총 187개 기관(공기업 36개 및 지방공사·공단 151개)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2,277개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자 인지세 공평부담 등 18개 유형 60개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공항 및 항만 관련 8개 공공기관의 816개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 및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여하지 않도록개선하는 등 13개 유형 53개사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총 52개 공공기관의 12,161개사규를 검토하여 398건의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Part II

04

공공부문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국민 편의 위주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나 원문정보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선제적, 등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란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이며,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등은 제외된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유치원, 초중고 교, 대학교 등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이 포함된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재단법인, 정부출연기관 등과 동창회 등 법인격없는 단체나 기관도 해당된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보공개의 절차는 접수(또는 이송), 제3자(있을 경우) 의견 청취,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구제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사생활 정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효율적 운영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1,439,415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8년 1,065,549건 대비 35.1% 증가하였고,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 대비 약 55배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부분공개 포함)은 95%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9 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1,439,415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846,953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2%(690,557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3%(109,836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5%(46,560건)이다.

정보공개 청구 통계

구분	1998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개율(A/B)	94.7%	95.8%	95.6%	96.1%	95.6%	95.5%	95.1%	94.5%
공개건수(A)	24,128건	349,516건	364,661건	440,016건	481,812	538,466건	638,726건	800.393건
청구건수(B)	25,475건	364,806건	381,496건	458,059건	504,147	563,597건	674,504건	846.953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했다. 평가 결과 일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Part II

05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개요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1998년 최초 도입 되었고, 20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정책실명제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매분기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주요내용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 신청 등 그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정책사업명, 추진배경, 사업개요, 사업부서, 선정기준, 추진내용 등이 공개된다.

기본적으로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해당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기관별 사업내역서를 통합하여 공개한다. 이때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보목록을 동시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국민신청실명제의 시행

국민들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 명제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별로 매분기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관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문서24(open.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안)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정책실명 제 심의위원회에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하게 된다.

정책실명제 주요성과

2018년 2,044건(중앙: 981건, 지방: 1,063건), 2019년 2,107건(중앙: 1,012건, 지방: 1,095건) 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하였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총 124건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아 81건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을 공개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문화재청)',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강원도)'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결과

구분	전체 (2019년)	국정과제 · 주요현안							
총 계	2,107	758	81	833	177	2,044			
중앙행정기관	1,012	485	67	273	52	981			
지방자치단체	1,095	273	14	560	125	1,063			

향후 계획 및 추진방향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신 청실명제에 대한 홍보, 참여창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3분기부터 대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서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접수할 수 있다. 창구 확대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신청실명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Part II

06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

국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

정부는 예산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국민 참여의 질 개선 및 제도정착은 물론,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민 참여 확대에 더하여 소통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을 확대하였다. 제안범위에 기존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 공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집행과정의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집행현장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하였다. 또한 참여단 인원(300명 → 400명) 및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 대상(1,000명→2,000명)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국민-정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병행하였다. 국민제안 논의 진행 상황 및 검토결과를 공지하고 분기별 사업집행 실적을 공개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 지 및 Facebook 계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내실 있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절차도 개선하였다. 국민제안 접수를 상시화하고 찾아가는 사업제안 팀 운영을 통해 인터넷 취약계층 등 사업제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제안 수가 2018년의 1,206건 대비 16% 증가하여 1,399건이 접수되었다.

게다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국민 생활의 질은 올리고, 불편과 어려움은 낮추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더불어 2019년도 참여예산 사업 중 효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2020년 예산에 계속 반영하였는데, 이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발굴 및 확대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열린 재정 운영

한국 정부는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이나 집행 내용, 결산 내역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열린 재정'을 2014년 12월에 구축하였다. 이후 2015년 5월 시범오픈을 거쳐 7월부터 정식으로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 이동도표(Motion Chart)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의료, 고용·창업, 교육등의 재정지원 정보를 생애주기, 성별, 관심 사항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자와 재정정책 담당자 등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세 통계 분석 기능도 제공 중이다.





다양한 시각화 자료 제공

┃ 어려운 용어에 대한 웹툰 제공

정부는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 2018년 1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재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열린 재정에서 공개되는 재정통계의 수를 120종에서 160종으로 확대하고, 숫자 이외에도 그래프·인포그래픽 등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용어를 웹툰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 연구자 등 정보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일반 국민용, 연구자용, 맞춤형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외부 주요 검색포털에서 '열린 재정'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II

07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 시행

법 제정 의의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증대와 함께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증가 추세

국민권익위가 2018년 4월 현행 법률 1,446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재정에서 지원 근거를 가진 법률이 913개(3,379개 규정), 이중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 규정을 가진 법률은 138 개, 환수에 더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등 유사 규정을 가진 법률은 21개에 불과했 다. 즉, 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전체의 15% 정도만 부정청구 시 환수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조례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8년 4월 16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먼저 보조금· 보상금·출연금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자격 없이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청구 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받는 행위 등 네가지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 각급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환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행정청은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는 공 공기관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정청구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신 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시행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랏돈은 눈먼돈'이 라는 그간의 다소 안일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각급 행정청의 제도 이행점검을 통해 엄정한 제도 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공공재정 누수 방지와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체계의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Part II

08

공공감사제도 운영

현행 공공감사 체계

한국의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체 감사로 구분되는데,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최고감사기구이고, 자체 감사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각 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그 기관과 그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2010년 7월 공공감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감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공공감사 체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의의

공공감사법은 공공감사체계의 개선을 핵심 가치로 하여 2010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체감사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의 제정으로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는 「헌법」과 「감사원법」이 있는 반면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일환으로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기관 내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법적근거가 미약하였으나, 공공감사법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둘째,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간 자체감사는 대부분 해당기 관의 기관장 통제 하에 있어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감사활동에 관한 적 절한 감사 기준과 절차도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온정적이고 자의적인 감사활동과 부실감사가 초

^{*} 기관수: 필요적, 선택적 감사대상기관, 예산 및 직원 수: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자료: 2018년 감사연보)

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감사법에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임용과 적정한 직급 부여,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자격요건, 결격사유, 평가 등 우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감사전문교육 지원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한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내실 화 및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공감사제도 운영의 성과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체감사기구 간에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체감사활동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활동의 개선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자체감사기구는 전체 669개 기관(중앙부처 46, 지자체 258, 공공기관 365)인데, 그 중 479개 기관이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개방형 책임자를 임용한 기관은 494개에 이르는 등 법 제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감사법 적용 자체감사기구 현황

2020년 1월 기준

구분		감사기구			감사책임자	감사기구	대상기관	
Т	正	전담	비전담	개방직	임명직	공석	현 원(명)	현 원(명)
합계(합계(669)		190	494	155	20	10,992	1,408,431
중앙행정	중앙행정기관(46)		11	34	10	2	3,368	284,624
지방	광역(16)	16	_	14	1	1	1,079	100,401
자치단체	교육(16)	16	-	15	_	1	779	339,727
(258)	기초(226)	106	120	80	144	2	2,530	229,249
공공	공기업(36)	36	_	34	_	2	975	138,866
기관	준정부(93)	88	5	91	_	2	911	110,256
(365)	기타(236)	182	54	226	_	10	1,350	205,308

[공공감사시스템 등록자료 참고]



한국의 ICT와 부패방지

Part III

01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개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6년 구축 이후 현재 연간 600여만명의 국민이 이용 중으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원문공개 및 공개 청구 등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 중이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연간 정보목록 2억건, 원문정보 638만간, 정보공개 청구 110만간 등 방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포털

모바일 정보공개

정보공개포털 주요 서비스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등 국민 관심이 높고 알아야 할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전 해당기관에서 선제적 공개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사전공

표정보를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별, 테마(주제)별로 분류하여 한 번에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과 소재지정보(URL)를 알려준다.

사전공표정보 연계주소 제공건수(2019년 12월말)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계	714	48	247	17	402
제공건수	200천건	30천건	107천건	20천건	43천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각 기관의 업무관리(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결재문서 원본을 정보공개 청구신청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은 2014년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2015년 기초자치단체·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으로 점점 확대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이 원문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건수 및 공개율 (2019년 12월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기관	134개	484개	603개	609개	613개	614개
원문공개건수	42만건	695만건	580만건	520만건	459만건	638만건
원문다운건수	47만건	94만건	228만건	334만건	422만건	424만건

정보목록 및 공개청구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문서정보 목록을 기관별로 조회하거나 검색해 볼 수 있고, 관심있는 정보는 목록에서 선택하여 공개청구하거나 또는 청구내용을 직접 입 력하여 청구 신청할 수 있다.

정보목록건수 (2019년 12월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54,897천건	178,662천건	192,744천건	207,608천건	176,432천건	206,393천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여부를 검토한 후 공개, 비공개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역을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2019년 12월말)

구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접수건수	87천건	692천건	756천건	855천건	982천건	1,118천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69천건	458천건	504천건	564천건	592천건	758천건
	공개건수	62천건	440천건	482천건	538천건	561천건	717천건

^{※ 2019}년 기준, 정보처리건수는 2006년 대비 약 10배 증가

정보공개시스템 주요성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은 2006년 최초 구축 이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정보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왔다.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의 결재 문서를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원문공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Part III

02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 구축배경

1990년대 이후 조달행정의 전자화, 즉 전자조달(e-Procurement)은 공공부문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개발 우선시대의 권위주의적 행정 패러다임이 종식됨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행정모델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달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조달행정체제 구축은 공공부문의 중요한 개혁과제였다. 이에 우리정부는 공공 개혁 차원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달행정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조달청은 1997년 이래 내부조달정보시스템(EDI)을 구축하여 조달업체 등록, 입찰집행 및 보증금 수납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달청 외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는 종이서류제출 등 비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공공조달분야의 비효율과 투명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대면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입찰 전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티, G2B)을 구축하고,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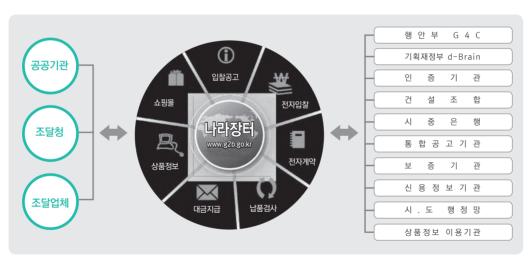
나라장터의 주요기능

나라장터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조달업체는 이용자등록,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 수납, 대금 지급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및 계약관리, 대금지급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구축 이래 나라장터 시스템은 입찰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구매조달 후 RFID태

그로 물품관리까지 할 수 있는 RFID시스템(2005년), 입찰대신 공공기관이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2006년) 등 조달관련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조달전반의 업무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조달 데이터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축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온통조달, 정보개방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나라장터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관련협회 등 227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에 조달업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업체가 입찰·계약 시 반복적으로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보증서, 자격심사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연계정보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나라장터 개념도

나라장터 주요성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은 2019년 기준 5만 8천여 공공기관과 43만 3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여 102.8조원 상당의 물품 납품 및 공사계약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라장터 거래 규모는 전체 공공조달계약의 72.8%를 차지

(2018년 기준) 하며, 연간 전자공고 44만 건, 전자계약 건수 102.1만 건에 이른다.

공공기관 방문횟수 및 제출서류 감소 등으로 조달거래 비용절감(연간 8.05조원) 및 탄소절감 (연간 약62만톤) 효과¹⁾를 거두었고, UN 공공행정상(UNPSA) 수상 등 해외에서도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인정²⁾받아 2019년 현재 코스타리카, 튀니지 등 세계 7개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달정보의 실시간 공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최신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지문인식 전자입찰, 부적격자 입찰차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조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국제투명성기구, 세계 반부패포럼 등에서 투명성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나라장터 제도 수출 현황

- 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2009.9월)
- 2) 나라장터에 대한 국제적 평가
 - UN: 혁신성과를 인정. '공공서비스상' 수여(2003.6), 전자조달 'Best Practice Model'로 선정(2004.11)
 - OECD : 더 이상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2004.5)
 -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공공분야 IT서비스 혁신사례로 선정 'Global IT Excellence Award' 수여(2006.5)
 - AFACT*: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e-Asia Award' 수여(2007.8)
 - * Asia Pacif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 OECD, ITU, UN DESA: '나라장터의 모바일 전자조달 서비스 '를 세계 4대 모범 사례로 선정(2011.11)

향후 계획

2002년 구축 이래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나라장터는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전자조달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조달청은 나라장터 외 별개로 운영되고 있던 26개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하여 조 달업체들이 26개 시스템별로 중복 등록하고 제각각 입찰서류를 제출해야했던 불편을 없애고 개 별로 이루어지던 자체조달업무까지 나라장터로 흡수하여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많고 다양해지는 사용자 중심으로 UI/UX를 개편하고 표준화된 전자문서 유 통시스템 및 통합표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누구나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장터로 다 가갈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자원 활용은 물론, 공공조달의 전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자조달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강력한 나라장터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2018년에 나라장터 및 26개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형태의 재구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Re-Design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2020년은 ISP를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구축전략 및 이행방안을 상세화하기 위한 ISM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전자조달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여 공공조달을 이끌어갈 미래형 공공조달통합시스템을 2021년부터 재구축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가속화와 그 성과를 해외와 전체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Part III

0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자금을 말한다(보조금법 제2조).

국고보조금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어 왔다.

이는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 기관 간 칸막이식 운영 등 일부 국고보조금이 주먹구구 식으로 집행되어 왔고, 보조금의 예산 및 결산 정보를 관리하는 재정시스템(dBrain, e호조, 에듀파인)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검증 등을 위한 사업관리시스템(행복e음, Agrix 등)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부정수급 방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전반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전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급자 정보를 통합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 (ISP) 수립을 시작으로 약 2년여 간의 구축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하였다.

e나라도움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던 것을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통합예탁기관에 예치하고 실거래 발생 시 시스템에서 거래처로 자동 이체되게 함으로써, 보조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나 보조금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보조금 통합예탁 체계



둘째, 보조사업 전 과정에 걸친 부정수급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해당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가족 간 거래, 출국자 또는 사망자의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의 의심 패턴을 입력하여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매월 탐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9년도의 경우 시스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을 개선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 직전 년도에 비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가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용자 1,1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6%가 e나라도움이 부정수급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부정수급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추가 개발하는 등 선진화된 탐지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모니터링 탐지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현황, 보조사업 현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중요재산 정보공시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예산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민입장에서 수혜 가능한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보조금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e나라도움 초기화면

e나라도움 통계센터 내 보조금 분야별 예산현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e나라도움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t III

0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UNI-PASS 의의와 개발배경

UNI-PASS(이하 '유니패스')는 한국 관세청이 관세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총체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밀수단속 및 외환관리를 통해 대외교역 질서를 확립하며, 신속통관 및 FTA 활용지원을 통해 국내 사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경제 국경관리 시스템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행정의 투명성이 높은 국가는 국가재정이 건실해 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에는 매년 평균 15%씩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수출입기업에 대한 무역 및 통관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관시스템이 없었고, 수출입기업이나 관세사 등은 통관을 위하여 통관 관련 수십개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기 다른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출입업체나 관세사 등은 본인의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하여 어떻게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처리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

며, 이로 인해 통관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했었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또한 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검사결과를 종이문서로 작성하는 등 수작업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세관통관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발생하였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각종 수출입 요건확인 자료를 허위서류로 제출하기도 하고, 관세사 사무원이 세관에서 급행료를 요구한다고 화주를 속여 돈을 받는 부정행위에 무방비 상태였으며, 통관 후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어떻게든 세관만 통과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나시대가 변하여 국민과 수출입업체는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절차와 실시간 통관절차 제공을 요구하게 되었고, WTO 등 국제기구는 교역에 장애가 되는 절차와 비용 단순화를 요구하는 등 국내외로 관세행정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유니패스를 개발하는 배경이 된다.

시스템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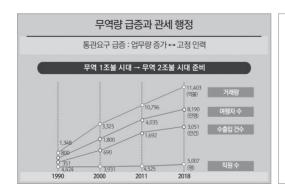
유니패스의 개발단계는 총 4세대(Generation)로 구분된다. 1세대 시스템은 관세 통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한 간단한 통계 도구였다. 이후 바르고 빠른 통관체제 확립으로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관세행정 및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EDI(전자데이터교환)를 기반으로 한 통관시스템이 개발되어 서류없는 통관체계가 완비되었다. 2세대까지 업무절차의 전산화가 목적이었다면 3세대로 접어들면서는 단순 전산화단계를 넘어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유선인터넷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산 시스템들이 2005년 통관단일창구 구축으로 인하여 본청중심으로 집중된 것이 3세대의 특징이다. 2016년 이후 유니패스 시스템은 4세대로의 진화하여 데이터 처리 최적화를 통해 올바른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기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세관직원과 외부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유니패스는 4차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AI, Big Data, Block chain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려 시범사업을 하는 등 통관분야의 속도를 높이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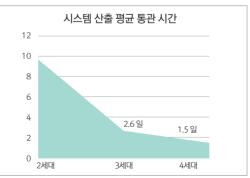
관세청 정보화의 세대별 구분 및 주요 특징



신속한 통관으로 인한 부적절한 거래 방지

유니패스는 수출입신고서부터 첨부서류까지 포함해서 100% 전자신고로 진행되는 세계최초 100% 전자통관 시스템이다. 1990년대 수출입신고를 종이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하는 P/L(Paperless)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허가제(수입면허제)에서 비검사 원칙의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비대면 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부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과 동시에 통관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또한 2005년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여 요건확인 기관, 관세청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자료교환이 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요건확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데이터 분석용 정보와 의사결정용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니패스 개발로 수출신고 처리시간은 과거 1일에서 1.5분 이내로, 수입신고 처리시간은 2일에서 1.5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권고하는 4시간보다 훨씬 빠른 세계 최고수준이다. 현재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유니패스는 웹 기반 포털을 통해 신고인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무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유니패스의 개발로 지난 30년간 세관 직원 수는 유지하면서 18배나 증가한 무역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성과 연구」에 따르면 유니패스 구축으로 인하여 총 6.4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4세대 유니패스 시스템의 경제적

구분	지표명	금액
직접효과	효율성, 개방성, 활용성, 지식활용성, 서류보관비용절감	1.82조원
기업효과	업무처리개선생산증대, 화물추적기능 사용효과, 화물시설이용 효과	4.60조원
합계		6.42조원

통관 및 화물처리 정보제공으로 투명한 관세행정 실현

유니패스는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실시간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B/L 단위의 화물 총량 관리로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시간 화물 처리현황을 화주 및 물류업체, 세관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통관 대행업자에 의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제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조사 부서에서 언제든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어 밀수방지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외에도 수출입 업체는 관세 납부를 은행과 연계된 e-Payment 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의 방문없이 언제든지 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종이문서 제출 없는 비대면 신속통관으로 부패가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아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간 화물 추적



통관 후 사후관리 체계로 부패가능성 제거

유니패스 구축 전에는 어떻게든 세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통관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세관직원이 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으로 신고오류 및 불법행위 색출을 위하여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과학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니패스는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무역·통 관분야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유니패스 구축을 통한 휴대품 통관 제도의 선진화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2006년 이래 11년 연속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WCO에서는 화물관리시스템과 통합위험관리시스템, Single Window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재 유니패스는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14개국에서 보급되었다. 2010년 유니패스 시스템을 도입한 에콰도르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재정수입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물류비용은 연간 320억원 절감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에콰도르는 2013년 WCO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탄자니아의 경우 유니패스를 도입하고 재정수입은 연평균 29.2% 증가, 통관시간은 31일에서 15일로 감소되었다.

2019년 한국 관세청은 5,148명의 세관인력으로 1,886만건의 일반수출입신고와 5,000만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을 처리하였다. 한국 관세청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이 이를 가능케 하였다. 한국 관세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50년간의 관세행정 발전과 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지원할 것이다.

Part III

05

청렴포털(부패 · 공익신고 창구)

청렴포털 구축 배경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소통방식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우리는 책 대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변혁은 신고 및 반부패 정보의 제공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반부패 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부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존 부패방지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청렴포털 1단계 사업 주요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위원회에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개통했다. 국민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시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온라인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여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중복정보 입력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신고 접수부터 담당자 배정, 처리결과 등록 등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고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담당자와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렴포털 2단계 사업 주요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는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온라인으로 부패·공익신고 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확대·개편했다.

1단계 구축된 청렴포털에서는 국민권익위에만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할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려면 개별 기관 누리집을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 자 보호·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59개 기관 (2020.10월말 기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신고하고, 보호·보상 신청 시 국민권익위에 자신의 공공기관 신고사건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건 정보 조회·입력기능을 마련하였다.

아울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신고 접수·처리 시 단계별 신고자 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업무 담당자에게 안내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 켰다.

청렴포털 3단계 사업 주요 추진 계획

2020년에는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 사업은 1·2단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반부 패 정보에 대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반부패 업무 처리 시 지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리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반부패 업무처리 중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공유·공개하여 반부패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이 공공기관의 개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청렴포털에서 반부패 관련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보의 공유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Part III

06

국민신문고(epeopl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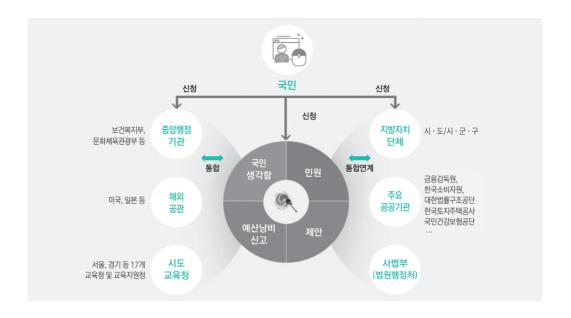
국민신문고 개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연결돼 국민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민원 시스템이다.

국민신문고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개별 기관에서 각각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따라 민원을 신청하려면 소관기관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민원이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처리중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국민신문고의 구축으로 이제는 국민신문고 단일 시스템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더라도 이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의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 SMS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 이용 현황

2005년 7개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접수창구가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었고, 2008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이용기관이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사법부, 2011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민원 접수창구를 통합하여 국민신문고로 모든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으로의 이용기관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7월 현재 289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국민신문고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여 민원의 신청과 확인이 더욱 편리해졌다.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모바일 서비스 등의 편리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국민신문고 인지도는 2006년 26.8%에서 2015년 64.3%, 2019년 81.2%로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40만 건이던 민원은 2010년 두 배인 80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6년 230만 건, 2019년 799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어 민원 서비스

국민권익위는 언어장벽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영어·일어·중국어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언 어에 대해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글을 모르는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신청 시 사용한 언어로 민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외국어 민원 서비스 언어별 개통시기

개통	2008.	2009.	2010.	2010.	2011.	2011.	2011.	2011.	2012.	2013.	2016.
	6월	12월	6월	11월	2월	5월	9월	11월	12월	11월	6월
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 남어	몽골어	인니어	태국어	우즈 베크어	방글라 데시어	캄보 디아어	스리 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국민신문고 우수성

국민신문고의 우수성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 (e-Gov) Top 10 선정을 시작으로, 2008년 유럽 전자정부 및 IT 컨퍼런스(e-Challenge 2008) 전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UN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국가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튀니지 정부는 2014년 한-튀니지 정부 간 MOU 체결을 통해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추진하여 2018년 3월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www.e-people. gov.tn)을 정식으로 개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행위기준 강화 Part IV

01

공직자 선발과정의 투명성 제고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채시험을 통해 충원이 어려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시험'이라 한다)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 공채시험은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상대적 우수자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 대해 헌법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채시험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공직 내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공무원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보 노력

'취업'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 쯤은 겪는 과정으로서, 사회로 진입할 때 만나는 첫 관문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에 대한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기도하며, 사회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공정한 채용을 통해 역량을 갖춘 조직의 구성원을 채용할 경우 그 조직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입직자의 만족도제고로 구성원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 중 하나라 일컬어지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 위원의 구성 및 수, 합격 결정 방법, 시험 절차 등 원서접수부터 합격자발표까지의 세부적 사항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비롯한 인사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의와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개인의 스펙과 배경이 아닌 직무역

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 시 응시원서에 가족사항이나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의 출신학교·출신지역·필기시험 성적 등을 일절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배경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경채시험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채시험에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외모로 인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서류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최종학력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교명을 제외한 학위·전공분야만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채시험 시 선발예정 직위(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 역량, 지식, 기술 등 '직무기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험공고 시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배경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배경이 아닌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 직무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면접'에 의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시, '구조화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구조화 면접은 면접관의 주관에 의존한 단발성 질문이나 돌발 질문을 지양하고, ① 평가 역량과 평가 기준의 명확화, ② 응시자 전원에 같은 면접방식 활용, ③ 사전에 합의된 질문 활용 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면접방식이다. 공무원 채용 시 채용 단계별 공정성 확보 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채용단계별 공정채용 방안

① 채용공고 · 원서접수	① 공고문에 채용 항목 구체적 명시 ② 다양한 방식(홈페이지, 채용사이트 등)으로 채용정보 공개 ③ 응시자격 불합리한 제한 금지
② 서류전형	① 편견 유발 정보(가족관계, 외모 등) 요구·제공 금지 ② 제출 서류의 철저한 진위 검증 ③ 평가 시 외부위원 1/2 이상 위촉 등 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③ 필기시험	① 문제 출제 시 공정성 확보 ②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인적사항 보호 등 공정한 시험 집행
④ 면접시험	① 면접위원 명단 대외비 관리, 면접조 배정 정보 사전 비공개 ② 직무관련성 있는 정보만 면접위원에게 제공 ③ 면접위원 사전교육 반드시 실시
⑤ 선발종료 후	① 합격자 결정 시 평가기준(배점항목) 준수, 임의 변경 금지 ②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ㆍ적법했는지 점검 ③ 응시생 대상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의견수렴

공정채용 문화 확산 방안

인사혁신처는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공정채용 노하우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전파·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7년부터 매년 '공정채용 워크숍'을 개최하여,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안내하고 공정채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그 대상을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 각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였고, 2019년에는 공정채용 관련 사례를 보완한 '공정채용 가이드북' 증보판을 제작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 면접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민간위탁교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출제역량 및 면접스킬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 노하우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채용 문화 확산 워크숍(2019.12.9.)



공정채용 문화 확산 워크숍(2019.12.9.)

2020년에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공공기 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컨설팅, 교육 등을 심화 운영할 계획이다.

Part IV

02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행위의 예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담은 윤리강령과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실천강령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을, 기타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은 해당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총괄하고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기 능을 수행하는 한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 태를 점검하는 집행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급 기관이 기관별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규율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행위기준을 강화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공무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로비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다른 공직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규율하는 등 행위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개정하였다. 우선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 등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립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설사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 시각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무수행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월 정부안을 제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0대 국회 임기가 2020년 5월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고자 2020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월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정부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 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그 밖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또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행위기준들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에 대한 지원 및 심사를 강화하고, 교육·홍보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직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Part IV

03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 · 운영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금품을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청탁·접대의 관행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5년 만에 그 결실을 맺어 2016년 9월 28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한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기관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는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둘째, 부정청탁의 금지이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금지된다. 그리고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4개로 구체화 하였다.

셋째, 금품등의 수수 금지이다.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또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의 수수를 제한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이다.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 신고자를 위한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하였다.

생활속 규범으로 자리매김 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을 보면 일반국민은 법 시행 1년차인 2017년 9월 87.3%에서 4년차인 2020년 8월 88.1%로, 공무원은 같은 기간 93.4%에서 97.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결과(한국리서치)

r i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성석	영향을	비진나	응납률(%)
-----	-------	-------	-----	-----	-----	--------

조사시기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원
2020년 8월	88.1	97.2	96.5	82.1	94.4
2019년 8월	87.7	96.6	97.7	79.2	92.8
2018년 9월	87.5	95.0	96.0	81.0	91.9
2017년 9월	87.3	93.4	95.7	71.1	91.6

협업을 통한 교육 · 홍보 활성화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의 정확한 법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각급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중심으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운영하면서법 주요 내용, 사례 및 주요판례 해설과 함께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신고처리 사례 및 조사기법까지 일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민간과 접점이 많은 5개 공기업(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을 선정하여 '청탁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연결고리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제도·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시공사·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와 직접 대면하여 업무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더 많은 수범자에게 전파하기 위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설·추석 명절대비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관련 카드뉴스, 권익비전을 통한 영상자료 배포(추석 팟캐스트, 토크콘서트 생중계), e-브리핑·생방송 출연 등 시각적인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 청탁금 지법을 친숙하게 각인하고, 법 시행 3년을 맞은 2019년 9월에는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을 개최하여 그간의 운영 성과와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일상 변화 사례를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전 국민과 공유(동시시청자 수 3천여명 기록)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원뿐만 아니라 언론 인·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취약분 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는 한편,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보완 이 행상황을 점검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Part IV

04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운영

구축배경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1981년 12월 31일 제정, 1983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및 등록된 재산을 심사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신고서 용지에 재산상황을 기재하여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재산심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재산신고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매우 컸다.

그래서,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등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윤리업무담당자의 재산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에 재산등록시스템과 재산심사업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시초이다.

※ PETI(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https://www.peti.go.kr

주요 추진내용

초기 PC용 프로그램 구축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웹 기반으로 재산등록시스템을 재구축하고, 2008년에 재산등록과 심사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10년간 운영하여 오다가 2018년도에는 노후 화된 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하는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현재, 공직윤리시스템은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기관에서 23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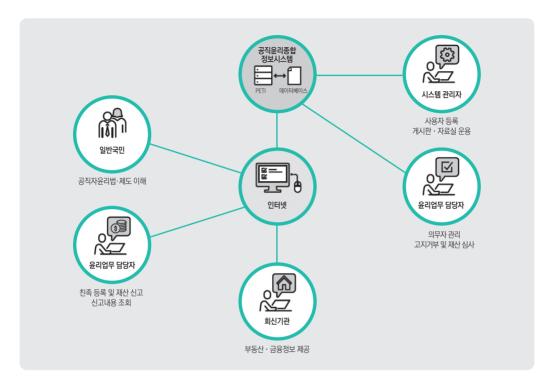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친족정보 등록, 피부양자가 아닌 친족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허가, 금융정보·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금융·부동산·채무 등 16 개 재산항목의 신고,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 제출 등 재산등록과 관련된 일련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각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는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및 재산신고서 생성, 금융정보·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확인 및 제공 의뢰, 재산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 고지거부 심사 및 허가 등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다.

금융정보, 부동산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제공 의뢰를 받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 잔액정보, 부동산(토지·건물) 정보, 회원권정보 등의 재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재산등록 및 심사뿐만 아니라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의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리(취업심사대상자 관리, 취업심사·승인, 위반 여부의 확인 등),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등 다양한 공직윤리 업무를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에게도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및 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선물의 신고 등 공직윤리 관련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기능도

추진성과

공직윤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제 공 동의만으로 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면 어디서든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신고를 할 수 있어 등록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다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여러 기관의 부동산정보 등의 증빙자료 첨부비용, 방문비용 등의 관련 경비는 물론 소요시간 등 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받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외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의 발생도 재산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해주는 요인이었는데, 이를 해결함으로써 재산을 보다 성실히 신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정리하여 종이 신고서에 기재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신고를 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후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시스템을 통해 금융·부동산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게됨으로써, 누락되는 재산 없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수백개의 정보제공기관과 문서를 주고받던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심사, 재산공개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공직윤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Part IV

05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제도 개요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 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취업심사 대상자인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 원회로부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할수 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협회는 6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 자본금 10억원 및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제도 강화 노력

1981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민관유착을 차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 10년간 강화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시기	취업제한제도 강화 주요내용
2011년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퇴직 전 3년 → 5년 • 법무 · 회계 · 세무법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 • 부정청탁 · 알선 금지 등 행위제한제도 도입
2014년	 취업제한기간 퇴직 후 2년 → 3년 비영리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 * 취업제한기관: 3,931개(2013) → 13,466개(2014) 2급이상 취업심사기준 확대(부서 → 기관 전체)
2016년	•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 취업심사대상자 확대(철도시설공단, 무역보험공사 포함)
2018년	• 협회 등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대상 확대(매년 6.30.까지)

취업승인 심사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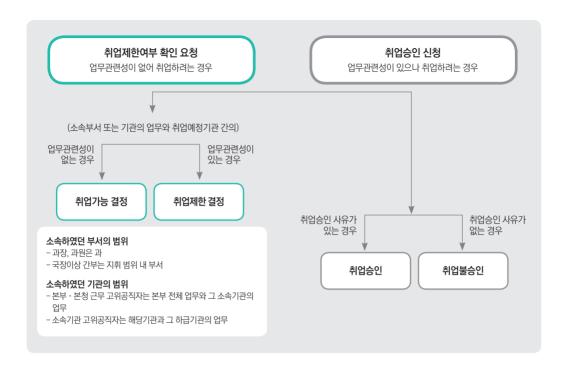
각 심사에서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를 근거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취업승인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결정'을 하게 되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발견될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을 하게 된다.



Part IV

0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제도 개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이하 '비위면직자')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협회에 퇴직일부터 5년가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2016년 3월 근거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기관 이 대폭 확대되는 등 취업제한이 강화되었다. 우선 기존 비위면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도 취업제한대상자로 추가되었으며, 취업제한기관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혐회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층검토 후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고발요구³⁾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³⁾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취업실태 점검 (연 2회)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취업실태 점검 절차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제한규정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해임요구를 취업제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계획 및 추진방안

비위면직자등의 효율적 관리 및 취업제한 위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취업확인 의무화(사전심사제), 비위면직자 등 발생 시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안 입법지원, 정부안 발의 등 다각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통보누락 취업제한대상자 확인 및 건강보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업현황 파악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경찰청·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공무원·군인 연금제한자 명단, 범죄경력자료, 기타소득자료 등 조회를 요청하여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취업제한대상자 누락 여부 확인 절차



Part IV

07

전관특혜 근절

추진배경

한국은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1983년부터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제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여전히 일부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기업 등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다.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민관유착 여지 사전 차단

현재 4급 이상(특정분야는 7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년 6월 4일 시행)을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외 없이 엄정히 심사받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발 역량을 제고하였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임의취업자를 적발해 왔으나,「공직자윤리법」 개정(2020년 6월 4일 시행)을 통해 세금 납부자료를 추가 확보하여고문·자문 등의 임의취업까지 적발 가능해졌다.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전관특혜 관행 척결

한국은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제도 이외에도 재취업 후 직무 관련 부정청탁·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행위제한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센터 개설 등을 통해 의무 위반자 적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고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현행 형벌 외에도 재취업 기관에서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취업제한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은 행위제한 의무를 잘 알리기 위하여 업무분야·상황별 퇴직자의 행위제한 의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2020년 4월 마련하였으며, 행위제한 의무에 대한 퇴직공직자 대상 교육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의 운영 개선으로 신뢰 기반 구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판단,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만 공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2020년 6월부터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 반영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재 7명(11명중)에서 9명(13명중)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재취업 후 로비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하위직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자 한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 및 운영

법조계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한다. 전관특혜는 그 성질상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되기 쉬워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

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대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법조계 전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11월 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였다. T/F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법조윤리협의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T/F 회의에서는 검찰수사절차상 전관특혜 근절방안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연장,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및 사후 징계 강화까지 모든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이 논의되었고, 2020년 3월 17일 법무부는 위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①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② 전관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③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④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전관변호사의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방안(①)은 인사 제도,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번 법무부 차원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구체적으로 ① [수임·변론 단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②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③ [검찰수사 단계]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④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 단계별 전관특혜 방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었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인·변론내역·변론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 및 공정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 계기준이 정비·강화됨으로써 비위변호사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변호사 수임 · 변론 단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본인 사건 취급 행위' 처벌 강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대판 · 수사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 강화 미등록 사무직원 ·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신설 사무직원 등 지도 · 감독 책임 조항 및 양벌규정 신설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수사절차 단계	전화변론 규제 및 부당한 영향력 차단 방안 변론내역 등 내부 시스템(KICS) 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변론내역 등 외부 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 도입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징계기준 마련	• 법조비리 신고센터 설치 · 운영 • 법조비리 조사전담반 설치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 정비 · 강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의 조속한 제도화 추진

법무부는 법원·검찰·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발표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관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부패의 감시 및 적발

Part V

01

부패 ·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개요

부패행위 신고제도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국가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02년「부패방지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가 사회적 혼란과 공공지출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신고제도는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법·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통제하기 위한수단으로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누구든지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보호 및 보상 대상이 되지만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부패 · 공익신고 접수 · 처리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부패·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원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 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부패 ·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신고자→위원회)	⇒	신고 심사ㆍ처리 (위원회)	⇒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신고자)	⇨	조사 · 수사결과 통보 (조사 · 수사기관→ 위원회)	\Rightarrow	조사 · 수사결과 통지 (위원회→신고자)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 이첩 · 송부 · 종결 등 * 60일 이내,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이첩 · 송부 · 종결 등 위원회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 		• 조사 ·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위원회는 조사 · 수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 게 결과 요지를 통보한다. 또한 조사기관의 감사·수사·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증거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Part V

02 부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부패범죄 단속의 기본방향 및 중점단속 대상 범죄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경쟁력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국가안보에 영 향을 미치는 방위사업비리, 국부유출비리, 지역토착비리, 인사·채용비리, 금융·증권범죄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부패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하 이익의 철저한 추 적·화수와 처벌 관련 기준 정립 및 검찰 구형 강화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함으로써 공 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

5대 중대 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방위사업비리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방위사업비리

국부유출비리

•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관련 범죄

토착비리, 채용비리

- 지역토착비리
- 공공기관 및 공공성이 강한 민간 분야에서의 인사 · 채용비리

금융 · 증권범죄

-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분식회계 등 금융범죄
- 대규모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증권범죄

부패범죄 단속강화

2013년 대검찰청에 반부패부가 신설된 이후 전국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원전·철도·해운 등 국민안전 위협 비리 수사, 국가 보조금 비리수사, 자료상 등 지하경제사범 수사를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위사업비리합수단」을 설치하여 방위사업비리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하여, 5대 중대 부패범죄의 현상, 구조적 원인 등을 파악하고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반)을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 전개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토착비리에 대한 고질적인 폐해를 분석하여 지역 상황에 따른 중점수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사 진행하도록 하는 등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부패범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추적, 환수하여 사회 저변에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패범죄 처벌강화

2018년 6월 구속기준 중 뇌물 범죄에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5대 중대 부패 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및 횡령·배임죄의 필요적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벌 총수 일가 등 횡령·배임 죄 관련 경제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여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검사 직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도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여 부패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Part V

03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범죄수익환수법제 개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9월 27일 제정되었다. 2019년 4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유해화학물질 범죄,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규정되지 않으면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 위 범죄들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의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죄로 인해 얻은 부정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었다. 이 법률안의 개정으로 위 범죄들에 대한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9년 8월에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몰수·추징 후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안 시행 전 유시수신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하

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었기에,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Part V

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관련 법률 제정

입법배경 및 의의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 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설특검제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 치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 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및 기소 독점권을 갖는 현행 검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 국 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공한 기관을 모델로 삼고 있다.

진행경과 및 계획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1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는 2017년 9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는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설치에 대한 자체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도 2018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규정한 7개 법안이 회부되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2월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듬해인 2020년 1월 공포되었다.

2020년 2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여 업무에 착수하였으며, 조직 설계, 인력충원, 예산 확보 및 업무공간 마련,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 및 규정 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Part VI

01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의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나 피신고자가 소속 된 공공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시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는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 대하여 사회적 기여도나 국고수입의 규모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부패방지법」제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후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연혁

2005년에는 국민권익위 외 피신고자의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근거를 마련하였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고 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각종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한도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2007년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근거를 마련하였고, 신고자가 비공 직자인 경우에도 신고자가 소속된 단체·기업에게 신고자의 복직 등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16년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경우 국민권익위가 관련 기관·기업 등의 장에게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17년에는 사립학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강화되었고, 2019년에는 법원이나 국회에서 부패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고소·고발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자 보호 규정이 준용되도록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행강제금·화해권고·구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의 장 등에게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구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2020년 9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총 384건이며, 이 중 339건을 처리하였고, 110건에 대해 인용하였다. 또한, 7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기간 중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였다.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인용	기각	취하	종결	조사중
2002~ 2020.9	384	110	36	73	120	45

부패신고자 신변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총 39건이며, 이 중 27건은 신변보호조치를 하였다.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한 후 위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21건을 인용하여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다.

신분공개경위확인요구 사건의 처리현황

(단위:건)

연도	합계	인용	기각	취하	종결	조사중
2002~2020.9	73	21	7	13	24	8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때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공공기관의 수입회복액)의 4%~30%로 한다.

200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부패신고로 인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은 총 2,475억여원이었고, 이에 따라 총 210억 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는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증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 신고에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경우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2006년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 111건에 대하여 총 9억 3천4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Part VI

02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의의

국민생활이 복잡화되어감에 따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가 사회적 혼란과 공공비용의 지출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뇌물수수, 국가 예산낭비 등 공공부문의 부패신고자에만 한정 적용되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연혁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이며,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이 대상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2016년에 99개 법률을 추가하였고, 2018년에 5개 법률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 법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467개로 대폭 확대되어 2020년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 비를 막기 위하여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18년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강화되었고,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8년 10월부터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이하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 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 또는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2020년 9월까지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총 233건이고, 이 중 185건을 처리하였으며, 56건에 대해 인용하였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등은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불이익조치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총 41건이며, 이 중 29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하였다. 누구든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한 후 위반자에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고자등의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한 사건은 총 96건이며, 이 중 21건은 징계요 구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다.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는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20건에 대해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등의 책임감면을 요구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의 처리현황

(단위:건)

				인	용						
연도	합계	소계	보호 조치	신변 보호	신분공개 확인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기각	각하	취하	진행
2011~ 2020.7.	416	125	54	29	19	3	20	80	33	122	56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이하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한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2020년 9월까지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은 총 1,370억 6천 5백여만원이었고, 이에 따라 총 96억4천7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①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②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 처분이 있는 경우, ③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2016년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총 52건으로 금액은 총 4억 6천 7백여만원이다.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등(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년 법 제정 이후 2020년 9월까지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실적은 총 18건으로 금액은 2천 9백 여만 원이다.

Part VI

03

각급기관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지원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 외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해당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권익위가 개입하기 전 부패·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기관의 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에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을 배포하여 기관별로 자체 신고자 보호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에는 기관장의 신고자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신고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책임관에게는 신고자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보호가 필요한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조사결과 2020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 등 440개 기관 중 380개(86.4%) 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 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427개(97.0%) 기관이 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440개 기관 중 388개(88.2%) 기관이 공익신고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고 상담·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신고처리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신고자 보호 역량 강화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기업의 대표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게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초기부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배포하여 민간기업이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가이드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를 포함하여 기업 내 공익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신고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공익침해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민간 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협 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민간부문(기업)의 부패방지 노력

Part VII

01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 지원

준법지원제도

상법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률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하였고, 2019년 1월 1일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확보, 준법교육 내실화, 내부통제절차 구축 강화 등이다.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으로 준법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 구성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위원회 위원 기준 명확화로 준법경영 강화

임원 구성의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출신이거나 해당 회사에 사외이사로 장기 재직하는 경우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2019년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확대하고 단일 회사에 장기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하였다.

개정 상법 시행령 내용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대	계열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사외이사 장기재직 금지	사외이사로 해당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재직 금지

임원 구성의 독립성이 제고되면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준법경영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 위원 기준 명확화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하 "전문가 위원"이라 한다)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하반기에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전문가인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2020년 4월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회사들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이 2016년 10월에 발표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가 강력한 기업부패 처벌 법률을 시행하는 등 기업의 부패문제가 국가 간 거래에서 사실상의 비재무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이 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내 기업

의 청렴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청렴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 시절인 2005년부터 제작해 온 윤리경영 정보지로, 국내·외 윤리경영 관련 최신법·제도 소개, 국내·외 동향, 전문가 칼럼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업 관계자, 학계, 경제단체 등에 웹진과 브로슈어 형태로 매월 제공해 왔다. 또한,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게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ISO 37001 Study」, 「ISO 37001 도입해봅시다」 코너를 신설하여 단계별 가이드를 수록하고 먼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신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콘텐츠 개선 및 가독성 제고 등 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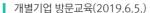


「기업윤리 브리프스」 브로슈어

국민권익위는 윤리경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개별기업 방문교육',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등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윤리경영 환경이 열악한 제약회사, 방위산업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21 • 대한민국 반부패백서









*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아울러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2012), 「윤리경영 우수 실천사례집」(2013), 「윤리경영 체 계수립 가이던스 (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가이드북 (2017),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2019) 등 전문자료를 발간하여 민간기업에 배포하고,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 해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국내기업에 소개하는 등 기업들이 윤리경영 환경을 조성 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Part VII

02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 개발 및 측정 지원

청렴지수 측정 필요성 및 추진 경과

오늘날 국제환경은 국가 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화·세계화 시대로 특정 국가 혹은 기업의 부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부패행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 나라별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비록 직접적으로 민간부문을 평가하지는 않으나, 일부 지표가기업의 부패와 상호관계에 있거나 평가 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 위주로 논의되던 '부패' 개념의 범위가 최근 민간까지 확대되고, 민간부패 예방·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중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2018년에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을 개발하였다. 2018년 에 개발한 모형은 공공부문과는 다른 민간 산업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부문 전반의 청렴수 준과 부패취약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부문별 측정을 기본으로 하였다. 측정항목은 IMD, WEF 등 국제 평가기관의 관련 평가 항목과 국내 타 주요 평가 항목 등을 종합 하여 구성하였다. 2019년에는 2018년에 국민권익위에서 개발한 모형을 보완·적용하여 산업부 문의 청렴지수를 시범 측정하였다. 보다 전문적인 측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 구회를 통해 추진하였다.

2019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개요 및 결과

2019년에 시범 측정한 산업부문의 청렴지수는 주요 10개 세부 산업부문별 청렴지수를 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산업부문 전체의 청렴수준을 수치화하였다. 세부 산업부문은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분류한 주요 10개 분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방송·통 신·미디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사회복지업, 문화·예술·스포 츠업 분야이다.

청렴지수 측정모형은 부패실태지수와 부패방지지수로 구성되는데, 부패실태지수는 산업부문 별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항목들을 반영하고, 부패방지지수는 부패문제에 대한 예방·대응의 시스템과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일부 측정항목은 산업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문항을 적용하였다. 측정대상 세부 산업부문에 종사하거나 1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각 산업부문별 300명씩 총 3,000명의 응답자가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2019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

측정범위 (가중치)	측정영역 (가중치)	항목수
	거래관계 부패 (0.228)	2개 항목
	관리활동 부패 (0.192)	2개 항목
부패실태지수 (0.606)	공정거래 위반 (0.218)	4개 항목
(31333)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0.190)	3개 항목
	우월적지위 남용 (0.172)	2개 항목
	공시 및 회계 투명성 (0.302)	2개 항목
부패방지지수	책임경영 (0.190)	1개 항목
(0.394)	주주권리 보호 (0.182)	1개 항목
	부패 예방 및 반부패 활동 (0.326)	4개 항목

※ 민간 부패에 대한 종합적 인식 및 의견 등 관련 8개 항목도 조사(측정결과에는 미반영)

2019년에 시범 측정한 결과를 보면 산업부문 청렴지수 구성요인 중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평가인 부패실태지수가 부패 예방·대응 관련 부패방지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각 지수 내에서 기업회계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관리활동 부패와 공시·회계 투명성 영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우월적 지위 남용(갑질 관행)과 부패 예방 및 활동 관련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산업부문별로 보면 10개 산업부문 중 교육서비스업, 금

용·보험업, 제조업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도·소매업, 건설업, 문화·예술·스포츠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향후 추진 방향

민간부패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 산업부문의 부패 취약분야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민간 산업부문은 청렴수준이 시장을 통해 일부 평가받는 등 공공부문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같은 직접적인 반부패 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차원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권익위는 개별기업이 스스로 기업의 청렴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업용 청렴경영 자가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 6월에 국민권익위의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향후 2019년 청렴지수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부문의 부패취약분야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과 관련된 부처·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Part VII

03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담합 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

담합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 생산량 등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하여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방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 시장경제에 많은 폐해를 유발한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나, 국민의 생활·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은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국민의 이익을 저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공 공분야에서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분야에서의 담합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조달청 등 공 공기관과 함께 담합을 감시하는 '입찰담합 방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을 대 상으로 담합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들을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 전용회선 사업 입찰(4개사, 과징금 약133억원 부과 및 고발 조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2개사, 과징금 약 77억원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진 23건의 담합 사건을 처리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저해시키는 공공분야에서의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적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시장 감시 강화

중소기업은 한국 전체 기업 수의 99%, 종사자의 83%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인 경우가 많 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불공정한 거래조건과 대기업에 편향된 성과 배분을 유발하여 중소기업이 '기여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수익이 악화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부족해 혁신 역량을 잃고 영세화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부품과 기술을 투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경제 성 장 동력마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시행해 오고 있다. 하도급 업체에 대 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업체 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 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술탈취의 경우 다른 위반 행위에 비해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의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 로 연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장의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매년 5천 개 원사업자와 9만 5천 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선, 건설, PB 등 주요 업종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 도급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 태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한 95.2%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기업 간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96%)임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의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17.5%)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에서 거래 관행 변화를 더욱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중 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등 원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에 자발적 상생 문화가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하도급 업체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것이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투명성 제고 및 선진적 시장거래관행 정착 유도

시장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이나 거래의존도의 차이로 어느 일방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비교적 열등한 지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기 쉽다. 불공정거래가 관행화되면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적 비효율화가 야기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가맹사업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대리점거래 및 대규모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체 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이다.

공정위는 이들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선진적 시장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우선 거래당사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공개 제도를 강화하였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중위값), 유통과정상 리베이트나 특수관계인 참여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형유통업체판매수수료율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유통 업태로 기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 더해 복합쇼핑몰, 아울렛 및 편의점을 추가하였고, 공개 정보도 판매수수료율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 물류비, 판촉비 등 주요 비용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대리점거래 시장인 의류, 통신, 식음료, 제약, 자동차부품·판매 업종에서의 거래 관행 및 주요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선진적시장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또는 공급업자의 강매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반품거절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노력의 결과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맹 거래분야의 경우 86.3%,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91.3%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위는 비교적 열등한 지위를 가진 거래당사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Part VII

04

탈세근절 및 역외탈세 차단 노력

공정사회 구현의 기반이 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부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에 정해 진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면탈할 경우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득재분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에 누수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성실 납세문화를 훼손하여 탈세행위가 더욱 확산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탈세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패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조세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정도가 큰 분야를 선정 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탈루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면탈하는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2018년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억원)

	7	ᅨ	법인기	사업자	개인기	나업자	부가기	가치세	양도스	と득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6,713	62,395	5,147	45,046	4,911	10,218	2,399	3,169	4,256	3,962
2018	16,306	67,184	4,795	45,566	4,774	15,216	2,570	2,996	4,167	3,406
계	33,019	129,579	9,942	90,612	9,685	25,434	4,969	6,165	8,423	7,368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

(단위: 억원, 건, 명, 건)

연도	ē	연금징수 및 채권확인	소제기	범칙처분	수색	
긴포	계 현금징수 채균		채권확보	조세기		
2018	18,805	9,896	8,909	369	258	456
2019	20,268	10,908	9,360	454	341	548
계	39,073	20,804	18,269	823	599	1,004

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국세청은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실신고 지원, 세무조사 등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세무조사의 경우 총 조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높은 자를 정밀하게 추출해낼 수 있도록 선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시에는 선정대상자 현황, 탈루혐의, 세무조사 사례를 상세히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진행하여 국민이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강화하였다.







대기업 · 대재산가 세무조사 브리핑(2019.9.19.)

세무조사 등 행정적 조치 이외에 탈루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또한 실시하였다. 특히, 탈세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정보비대칭이 있는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연장하여 면밀한 세무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함으로써 조사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 관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검찰,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협업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탈루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제도개선 내용	관련법령	시행시기
■ 역외거래 부과제척 기간 연장	그세기보버	2019.1월
■ 국가기관 등이 과징금 부과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공	국세기본법	2020.2월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2017.12월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2018.1월
■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금인정 제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019.1월
■ 이전가격 과세시 거래구조 부인·재구성		2019.1월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2020.1월
■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9.1월
■ 수출입단가 조작관련 관세조사 자료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3월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 대응 강화 노력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세금납부는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뤄냈다. 친족을 이용한 체납체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조회 대상자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난자에	내하	버저브저	대으가하 바아
X403 717	게버지에	-117		레이어된 이다.

연번	과제내용	협업 부처
1	여권 미발급자 출국 금지	법무부, 국세청
2	감치명령 제도 도입	기재부, 국세청
3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확대	국세청
4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국세청, 관세청
⑤	출국금지 실효성 강화	국세청, 법무부
6	체납징수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	복지부, 국세청
7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복지부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도 추진하였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고의적·악의적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였다. 2020년부터는 세무서 내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적으로 운용하여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 사회적, 행정적 제재를 통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역외탈세 대응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스위스 UBS은행 등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세계 각국은 G20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11월 역외탈세 혐의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임시조직인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출범한 후, 역외탈세 대응성과와 역외탈세 대응조직의 상설화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1년 1월 정규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신설되었다. 2015년 1월 국가 간 정보공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기능조정을 통해 정보교환 업무가 추가되어 현재의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로 변경하였다.

역외탈세 차단 노력

역외탈세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금융·법률·조세분야 전문자의 조력 하에 그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근절을 위해 정보수집·분석 강화,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지속적인 역외탈세 대응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2년(2017년~2018년) 동안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하였다.

연도별 추징세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 수	211건	226건	223건	228건	233건	226건
추징세액	10,789	12,179	12,861	13,072	13,192	13,376

또한 외국과의 국제공조를 지속 확충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현재 14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하고 2014년 10월에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에 46개국, 2018년에 79개국, 2019년에 96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올해는 109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9년 해외부동산 관련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해외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검찰 산하에 설치된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여 금감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반사회적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적극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자금세탁, 역외탈세 등 편법을 동원한 반부패 행위를 발굴하고 지능적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함으로써 성실납세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고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Part VII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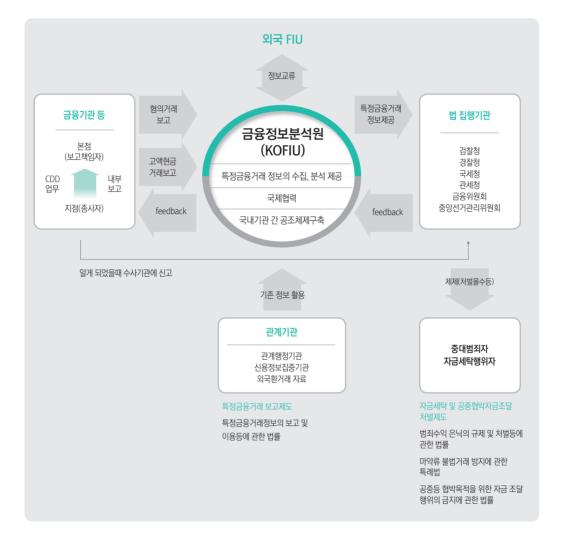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노력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그 중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설립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등의 의무는 1989년 설립된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정하고, 각 국의 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설립)에서 발표하는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01년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한편,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회사등의 보고를 통해 수집·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추가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제2조)에 대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제4조), 고객의 신원 등을 확인(제5조의2)해야 하는 등의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ATF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대부 업자뿐만 아니라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2019년 7월 1일)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였다(2021년 3월 시행 예정).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국 제도와 FATF 국제기준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융회사등의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환전 등 일회성 금융거래(Occasional transaction)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FATF 국제기준은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에 대하여 신원 사항 이외에도 고객을 지배·통제하는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2016년 1월 1일 시행).

특히, 금융회사등은 법인 또는 단체 형태의 고객일 경우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①법

인 또는 단체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②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③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 ① 대표자 또는 임원 ·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 ② 최대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한 사람
- ③ ① · ②외에 법인 ·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향후에도 한국은 FATF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논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협력 및 대국민 인식제고

Part VIII

0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그간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우리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53점/52위)하고, 기업 등 민간영역의 부패 심화로 국 가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문재인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 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는 사회 각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모니터링 하는 등 반부패 정책 과정 전반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각계가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1월 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민관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제계, 직능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공공, 공익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대표자 30여명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현황

부문	참여 단체/ 직책	부문	참여 단체/ 직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감사협회/ 회장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직능		
(6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5명)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인식시외국시합의외/ 외경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방송협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언론 • 학계 (7명)	한국신문협회/ 회장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여성신문/ 사장	
시민 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8명)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부패학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윤리경영학회/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70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공공 (3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공익 (3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민관협의회의 정책논의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위에 6개의 분과협의회(총괄·공공정 책·경제·교육·지방자치·사회분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반부패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숙성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정부 스스로 제기하기 어려운 반부패·청렴 이슈를 과감하게 의제화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실무분과협의회 120여회, 민관협의회 10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2018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2018.10.5.)



2019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2019.4.2.)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마스터플랜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이를 완성(18.4월)하는 한편, 직접 발굴한 20여 개의 정책의제중 토론과 각계의 합의를 거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활성화 방안' 등 현재까지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였다.

2018~2020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반부패정책 제안

◇ 2018년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리 개선방안

◇ 2019년: ▲청렴사회협약 추진 제안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제도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방안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 2020년 :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 지자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Part VIII

02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청렴사회협약 체결 추진

국민권익위는 강력한 반부패 법·제도의 시행과 부패행위의 규제 및 위반 시 처벌만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 각계가 연대하여 스스로 청렴을 약 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과 확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역별 및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고자 노력하였다. 17개 시·도의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청렴사회협약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협약 체결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추진준비단'을 꾸리고, 「청렴사회협약 길잡이」를 발간 배포 등 각 지역 및 분야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까지 모든 광역 시·도에서 청렴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지역별 협약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공공기관, 경제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의 주 요 부문이 모두 참여하여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협약 체결(2019.6.19.)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사회 각 분야에서도 청렴사회협약이 속속 체결되었다.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39개 기관·단체가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36개 공공기관이 공기업분야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과 공기업이 솔선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2019년에는 국방부를 포함한 24개 기관·단체가 청렴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분야협약을 체결하였고, 방위산업분야 29개 기관·기업이 방산비리 예방과 방산기업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을, 하반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중견 회계법인 등 46개 단체·법인이 참여하는 회계분야 청렴사회협약이 체결되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업계가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협약(2018.9.28.)



회계분야 청렴사회협약(2019.10.31.)

청렴사회협약 이행

협약은 일회성 선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체결 이후 참여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지역별 ·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2019년 이행 사례

- ◇ (공기업분야 협약/36개 공기업)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성공사례 39건, 실패사례 20건 포함)발간 및 민간기업 배포, 협력사 상생·청렴문화 확산프로그램 시행
- ◇ (경기도 협약/ 47개 기관·단체) 협약기관별 공익제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규정 정비 및 공동 홍보 실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가 원가공개 실시 등
- ◇ (서울시 협약/56개 기관·단체) 협약기관 합동 '갑질 근절 대책' 마련·시행, 고객기업의 갑질 근절 노력을 신용평가 및 금리우대 등에 반영
- ◇ (대전시 협약/ 43개 기관·단체) 직장내 괴롭힘, 갑질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상담부터 처리결과까지 민간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 ◇ (광주시 협약/ 22개 기관·단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협약기관의 행동강령 개정, 사립대학 및 시민단체의 자체규정에도 반영을 유도하는 등 민간분야에도 확산

Part VIII

03

시민참여

민간단체의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발굴ㆍ지원

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 창의성,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2~3천만원 정도의 사업수행 예산을 지원하며, 반부패·공정 주제 창작연극 제작, 캠퍼스 청렴모의법정 개최, 청소년 청렴영화제 개최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평론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청렴영화제



창작연극 〈라이더〉 대학로 공연



캠퍼스 청렴모의법정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국민권익위는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이 민간참여형 부패예방 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이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점검·감독·개선요구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 및 제도운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및 감사 기법을 교육하고 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270개 기관 중 260 개(96.3%) 기관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20개 기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및 감사 실시 등 실질적인 활동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모니터링 실시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의 방향과 정책변화에 대한 국민체감 등의 피드백을 얻고자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국민들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반부패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제1기 국민모니터단 발대식(2018.4.28.)



■ 제2기 국민모니터단 토론회(2019.4.27.)

2018년에는 정부의 반부패 마스터플랜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의 추진상황, 효과성, 정책 인지도 등을 국민모니터단이 직접 모니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고자노력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 생활 속 반칙'에 대하여 모니터단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정책개선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설문,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6개의 '생활 속 반칙'을 선정하여 국민모니터단이 직접 해소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새화	소	바치	주제별	채소	.ㅂ١이	제시
\circ	\neg		ㅜ~!! ㄹ	에그	-0 "	

과제	해소방안
국가장학금 선발 공정성 강화	▶지급횟수 및 반복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선발기준 및 심사결과 세부사항 공개 등
고위공직자 부정청탁 근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 제제 및 처벌조항 신설 ▶고위공직자인 경우 처벌수의 강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채용 공정성 정도를 국가보조금 지급금액과 연동 ▶전문기관 위탁채용 도입 및 개방이사제 확대 등
요양병원 비리 개선	▶CCTV 설치 및 보호자의 운영위 참여 의무화 ▶의료행위 보호자 확인·사전동의 강화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 마련	▶면접장 녹화 및 기록관리, 항목별 세부평가점수 공개 ▶자소서ㆍ이력서 간소화, 탈락자 이의제기 절차 신설
사회지도층 공개프로필 개선	▶연고주의 조장하는 출신지, 출신학교 등 삭제 ▶범죄이력, 사회공헌, 납세ㆍ체납, 업적 등으로 대체

국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7월 24일 구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해 도입되어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반 국민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처리한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1과 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이고,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민감사청구 처리 절차

* 그림 출처 : 감사원 누리집(www.bal.go.kr)

Part VIII

04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및 교육체계

청렴연수원의 설립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적발·처벌과 같은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통해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렴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교육을 전담할 전문교육기관으로 2012년 10월에 청렴연수원을 설립하였다. 청렴연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에 따라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였다. 부패방지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의 방법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실시한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기관장의 청렴교육 참여 여부, 전체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율, 신규 임용자, 승진자 외에 고위공직자의 대면 청렴교육 이수율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결과는 국민권익

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외에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청렴연수원 개원(2012.10.25.)

청렴교육 운영 체계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소속 직원에 대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4조(국회 등의 특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자치단체(교육지원청 176개 포함), 공직유관단체 등 총 1,939개에 달 하며,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공직자의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율은 평균 93.1%인 것으로 나타 났다.

청렴교육 운영 체계

청렴연수원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렴연수원에서는 연간 청렴교육일정을 마련하여 고위공직자와 청렴·감사 업무담당자 등핵심인력과 법적 대면교육 의무가 있는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렴연수원은 각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청렴교육 강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 정책에 관한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과 강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기관 및 청렴교육강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에 활용하고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공직자와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청렴을 주제로 한 수기, 다큐멘터리, 랩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청렴,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1,06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50편의 입상작이 선정되었다.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2019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2019.12.11.)

Part VIII

05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2012년 10월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 개원한 이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16년에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된 이후에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렴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청렴교육은 주요 반부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뿐 아니라,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대상자의 청렴역량 4요소(청렴민감성, 청렴판단력, 청렴동기화, 청렴수행력)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대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의, 토론, 실습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과정 운영

청렴연수원은 신규자, 승진자, 고위공직자, 청렴업무 담당자,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청렴교육강사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교육생이 아닌 기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공연 형식의 '청렴라이브', '지방의회의원 청렴연수과정', '기관 청렴도 향상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청렴연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16개의 대면교육 과정을 총 128회 운영하여 19,694명의 청렴교육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2020년에는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을 적용한 '밀레니얼 청렴리더십과정'을 신설하고, '청렴라이브' 운영 횟수를 대폭 증가하여 총 17개의 대면교육과정을 170회,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도 청렴연수원 대면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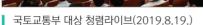
세부분야	과정명	교육대상	
	청렴라이브(Live)	기관장, 고위직 포함 전 직원	
기관대상 청렴교육 (3개 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업 청렴교육과정	공직자	
(3 11 -1 0)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청렴리더십 향상과정	고위공직자 · 학교장	
	신규자 청렴역량 향상과정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승진자 청렴역량 향상과정	승진 공직자	
(6개 과정)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2020년 신설)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근무자	
	청렴 엑스퍼트 과정	공공기관 감사청렴업무 담당자	
강사양성 교육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기본 · 전문 · 보수교육)	공직자·비공직자	
(4개 과정)	교원 직무연수과정	청렴교육 기본강사	
	청렴역량 향상과정	공직자·비공직자	
기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과정	일반 공직자	
(4개 과정)	권익구제 역량증진 과정	공공기관 고충민원처리 담당자	
	국민권익 공통직무과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청렴연수원이 2013년에 개발한 '청렴라이브'는 판소리, 연극, 마당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공연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청렴교육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직원 등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렴연수원은 매년 각급 공공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청렴라이브' 공연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44회의 '청렴라이브'를 운영하였다. '청렴라이브'는 교육생들이 부패가 야기하는 문제와 청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감동과 재미를 느낄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매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청렴연수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지방의

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반부패 법령에 대한 강의와 지역사회리더로서의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서약식 등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2019년에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포항시 등 총 1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 서울특별시 의회 청렴연수과정(° 19.12.12.)

또한 청렴연수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국립외교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무 직,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공직 내부로의 파급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교육 트렌드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능동적 참여형 교육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청렴교육과정 운영

청렴연수원은 많은 공직자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청렴교육과정'(http://acti.nhi.go.kr)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2월 말 현재 청렴연수원이 자체 개발한 '부패상황 자각하기', '청렴판단력 키우기',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 13개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온라인

청렴교육을 이수한 공직자의 수는 총 96만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2019년 한해 동안에는 총 177,132명의 공직자가 온라인 청렴교육을 이수하였다.

청렴교육강사 양성 제도 운영

청렴연수원은 각급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렴교육강사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연수원이 양성하는 '청렴교육강사'는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강사',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에 대해 전문적인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소양강사'로 분류된다. '기본강사' 및 '청렴강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렴연수원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소양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20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청렴연수원은 총 2,280명의 청렴교육강사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기본강사는 1,978명, 전문강사는 264명, 소양강사는 38명이다.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명단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crc.go.kr)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지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외국공직자 대상 반부패 연수 운영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동 연수 참가자들은 각국의 반부패기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며, 매년 약 15명이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기존 영어 과정 외에 중앙아시아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러시아어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밖에도 각국 정부 및 유엔개발계획(UNDP)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별 맞춤형 반부패 정책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오고 있다.

Part VIII

06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청렴한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렴연수원에서는 국민들과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부터 성인까지 세대별,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미래세대 청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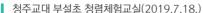
청렴연수원은 청렴의 의미와 청렴한 삶의 실천 필요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렴체험교실'과 '청렴문화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체험교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토론 배틀 등 다양한 참여형·체험형 활동을 제공하며, '청렴문화캠프'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청렴 골든벨', 청렴역사 특강, 청렴 마당극, 청렴 랩(Rap)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2019년에 '청렴체험교실'을 10회, '청렴문화캠프'를 8회 운영하였다.

대학생 및 일반성인 대상 청렴교육

한편 청렴연수원은 국공립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반부패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청렴문화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주민 대상 청렴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청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방송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에 CBS의 '세

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통해 '청렴,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방송되었으며, 강연회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CBS-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어 2019년 말 기준 약 26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였다.







CBS 방송강연회(2019.6.20.)

대국민 청렴콘텐츠 개발보급

청렴연수원은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 원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세대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 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청렴연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심과 흥미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개강좌 '청렴-MOOC'와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형태의 교육 영상물 '청사진'을 각각 국어와 영어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렴-MOOC는 온라인 공개강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형식의 대국민 청렴강좌로 역사·문화 등 인문학 속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렴-MOOC는 국내대표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기관인 K-MOOC(국가평생 교육진흥원) 및 GSEEK(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등에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사진'은 '양심', '공익신고자', '부패가 낳은 참사', '청렴반경 10미터'를 주제로 한 5~6분 분량 의 짧은 영상물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청렴연수원은 미래세대가 올바른 청렴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게임형 교육 콘텐츠인 '신념의 보석'을 개발하였다. '신념의 보석'은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의 상황기반 학습 (Situated Learning) 원리를 기반으로 한 보드게임형으로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 등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국민생활 속에 청렴·공정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렴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과 협조해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보드게임 '신념의 보석'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Part IX

01

반부패국제협약의 적극 이행

한국정부는 반부패 국제협약의 이행을 포함한 다자간 반부패 라운드 참여, 국제기구 및 외국 반부패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의 이행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 국제협약 논의에서 벗어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이다.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120여 개국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UN반부패 협약에 대한 서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 12월 14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3년에 UN반부패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국내 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동 협약의 비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9년 말 기준 협약 당사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총 186개국(비당사국: 시리아(서명국), 북한,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수리남)이다.

국민권익위는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거한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에 대한 이행점검에 대응하고 있으며, 협약당사국 총회 및 이행점검그룹회의,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가합의된 이래,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사국 상호간 동료평가 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과 제4장(국제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기 이행점검 (2010~2015년)에서 한국은 2012~2013년 중 불가리아와 인도로부터 협약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았으며, 2013~2014년 중 한국과 몽골이 미크로네시아의 협약 이행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한국은, 제3장과 관련하여 상세한 부패범죄 통계 보유, 법원의 자의적 재량행사를 막기 위한 정교한 양형기준 지침, 국민권익위의 부패예방 역할을, 제4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형사사법공조에서 요청국가들과 협력한 점, 금융정보분석원이 사법공조에 충분한 역할을 한 점,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다수기관이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에 노력한 점 등을 우수사례로 들었다.

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제5장(자산회복)을 대상으로 하는 2주기 점검(2016~2021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 대상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점검은 2019년 6월에 개시되어, 2019년 9월 이행점검을 위한 포컬 포인트(국민권익위, 법무부, 외교부) 지정에 이어 2019년 11월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출을 완료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 처벌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서 2018년 5월 현재 36개 OECD 회원국 및 8개 비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을 포함한 44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한국은 동 협약 비준에 맞추어 1998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라는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은 연간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상호 평가하고, 협약 위반 사건 수사 및 관련 국제공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심사하는데, 심사국으로 서의 참여는 협약이행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협약 인지도 제고·민간협력 분야를, 법무부는 협약이행 및 처벌 분야를 각각 담당하여 패널 세션 진행 및 이행심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1999년 7월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여부를 심사하는 1단계 심사를 받은 데 이어 2004년 11월 호주와 핀란드를 심사국으로 하여 협약의 이행을 심사하는 제2단계 심사를 받았다. 2011년 10월 핀란드와 이스라엘을 심사국으로 하여 협약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이행을 심사하는 제3단계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3단계 심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2018년 12월 이탈리아와 핀란드를 주심사국으로 한 4주기 이행점검에 대한 이행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검찰과 경찰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해외뇌물 목적의 부정회계 적극 수사, △정부기관 및 민간의 해외뇌물 적발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심사단은 한편,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한 광범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과, 최근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OECD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한국대표단은 2019년 12월 10일~13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4주기 점검 후 권고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서면과 구두로 보고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해외 뇌물 관련하여 자연인과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법안과 감청(wiretapping) 수사가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 진행 중임을 소개하였다.

Part IX

02

|국제기구 및 회의체를 통한 반부패라운드 참여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부패 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G20 차원의 공통적 인식하에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 반부패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반부패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선언문에 명시하였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정상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서 부패척결이 선제적 조건임을 강조하며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 정상선언문의 부속서에 반부패 행동계획이 포함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G20 반부패 실무그룹 창설 이후에는 우리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7-2018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G20 회원국들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2018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의 주도로 G20 회원국에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는 UN반부패협약 제5조(부패방지정책과 관행) 이행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사례를 제공한다. (관련링크: 국민권익위 영문홈페이지〉반부패〉국제협력 G20 ACWG 활동)

2091년 G20 정상회의는 6월에 개최된바, 1월과 6월 열린 2차례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에서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 및 '인프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모음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부속서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주요 주제인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의 공익신고 자 보호제도를 바탕으로 고위급 원칙 작성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호조치의 대상이되는 내부고발자 대상 보복의 유형과 관련하여, 인사상 조치, 근무환경 등 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계약의 해지, 거짓정보 유포 등 조직 외부의 사업상 파트너에 대한 보복 유형도 포함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 원칙안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정신적, 직업적,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 육체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1개)는 2003년부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미국, 칠레와 공동으로 APEC 내 반부패 협의체 설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04년 칠레 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에서 '산티아고 선언'과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국민권익위(구 국가청렴위원회)는 2005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 엄에서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2010년에는 미국과 협력하여 동 T/F가 워킹그룹(WG)으로 승격되는 데 일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홍보하고 회원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ADB/OECD 아·태 반부패 협의체

ADB/OECD 아·태 반부패 협의체는 1999년 창설된 이래 아·태지역 국가들의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해 오고 있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총 31개국이다.

ADB/OECD는 아·태지역 정부 간 반부패 정책 협의를 위한 조정그룹회의와 반부패 역량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민관 합동 아·태지역 반부패 컨퍼런스를 2~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9차 반부패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으며, 동 회의를 계기로 제1차 공공청렴네트워크 회의(PIN), 제3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LEN)와 제22차 ADB/OECD 조정그룹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2017.11.15, 서울)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협력

반부패 교육훈련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회원국 79개)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학술자문관 파견, 정기적 맞춤형 연수 등 통하여 각자의 반부패 교육 분야 지식과 역량을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신설된 IACA에 약 1억5천만원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대 이사로 김영란 전위원장이 선출되었고, 2018년 제7차 당사국 총회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신임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2019~2024)되었다.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에 열리는 제9차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되었다.

Part IX

03

양자협력을 통한 반부패 기술지원 선도

국민권익위는 UN반부패협약상 한국의 부패예방 전담기구로, 타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와 중동 등 여러 나라와 MOU를 맺어 반부패 기술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반부패 MOU 이행협력

- ① 한-인도네시아 부패방지협력사업: 2006년 12월 처음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는 한국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반부패 MOU로,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부패예방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한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위원회(KPK)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프로그램 등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
- ② 한-베트남 부패방지협력사업: 국민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부패평가기준' 및 '신고자 보호 정책' 관련 국제 워크숍에서의 주제발표 등을 통해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해왔다.
- ③ 한-몽골 부패방지협력사업: 국민권익위는 2010년 2월 몽골의 요청에 따라 몽골의 부패방지청(IAAC)과 반부패 MOU를 체결하고 2010년부터 한국에서 시행중인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전수하였다. 그 결과 몽골은 2010년부터 청렴도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④ 한-튀니지 부패방지협력사업: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튀니지 국가반부패청(INLUCC) 요청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튀니지와는 국민신문고 구축사업('15.12월~'17.12월)을 통해 협력관계가 시작되었고, "KOICA-UNDP 민주주의 지원사업"('16~'19, 4백만불)의 일환으로 튀니지부방위 고위급 대상 연수 실시('17.3.6~10)한 바 있었고, 국민신문고 개통식('18. 3. 23.)을 계기로 사무처장이 튀니지를 방문하면서 MOU가 이루어졌다.
- ⑤ 한-이라크 부패방지협력사업: 국민권익위는 2018년 4월 이라크 청렴위원회(Commission of Integrity)와 서면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8월에는 세종에서 권익위-UNDP 공동으로 이라크 청렴위원회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를 하였고, 2019년에는 이라크 청렴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초청 연수(19.6.26~29, 세종·청주)도 실시하였다.
- ⑥ 한-미얀마 부패방지협력사업: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는 2018년 UNDP와 공동 반부패협력사업 파트너로 선정되어 부패영향평가를 전수받았고, 또한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희망하여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미얀마 부방위는 18년 5월 세종에서 정책연수와 함께 MOU에 서명하였다.
- ⑦ 한-카타르 부패방지협력사업: 국민권익위는 2018년 10월 카타르 행정투명성청 (Administrative Control and Transparency Authority)과 MOU를 체결하였다. 카타르는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해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에 18년 10월에 세종에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평가 등에 대한 정책연수와 함께 MOU에 서명하였다.
- ⑧ 한-쿠웨이트 부패방지협력사업: 국민권익위는 2019년 5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쿠웨이트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반부패청(Kuwait Anti-Corruption Authority)과 반부패 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는 1월 쿠웨이트 국제청렴컨퍼런스에 UNDP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발표를 위해 참석한 것을 계기로, 3월 정책연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쿠웨이트 반

부패청의 협력 요청에 의해 성사되었다.



■ 쿠웨이트 반부패청과 MOU 체결 서명식(2019.5.1., 쿠웨이트시티)

⑨ 한-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협력사업: 권익위원장과 우즈벡 검찰총장 간 면담('18.8.16.) 시, 우즈벡 측이 한국의 반부패·국민권익 보호 분야 정책과 경험을 공유를 요청한 바 있고, 또는 2019년에는 권익위-UNDP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받은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19년 10월 서면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UNDP 반부패 공동협력 사업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 29일 "한국과 세계의 반부패 경험 공유"를 주제로 UNDP 서울정책 센터와 공동 개최한 "2015 서울 담화"의 후속 조치로 UNDP와 협력하여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가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권익위-UNDP 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UNDP와 협력하여 국민권익위-UNDP-개발도상국 3자 간 반부패 개발협력 분야 발굴,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 등의 공유를 위한 저작물 및 공동사업 개발,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패예방 제도의 개도국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MOU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의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2016년에는 베트남측 수행 기관인 감찰원이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국민권익위가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또한 63개 지자체 대

상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3월 16일 국민 권익위와 UNDP, 베트남 감찰원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범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UNDP 공 동으로 10월 24일부터 3일간 세종에서 베트남 감찰원, 중앙내무위원회, 총리실 관계자 등 7명을 대상으로 후속연수를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미얀마와 코소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기술지원 하기로 하여, 화상세미나와 연수를 통해, 부패영향평가가 양 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법령과 운영 사례를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해, 화상 세미나 (말레이시아 1월, 우즈베키스탄 3월)와 초청연수 (말레이시아 4월, 우즈베키스탄 9월)를 통해 양국에 한국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였다.



말레이시아측과 4자 화상회의(2019, 1,24,)

동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정책 콘텐츠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UNDP가 개도국 개발 사업 전문성

및 현지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수원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라는 3자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모범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수처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감사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직자윤리법
- 국가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 국제뇌물방지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 부패재산몰수법)



